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 운영〉

■ 박지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759)

2026. 3.

기 후 에 너 지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지역)계획 수립	4
2. 재생에너지 발전지구의 정의 및 지정	8
3.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접속설비, 지정해제 및 사업시행자 ..	15
4. 실시계획 수립, 승인 및 승인 취소 등	21
5.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26
6. 토지수용, 준공인가, 전담기구 지정 등	31
7. 벌칙	35
※ 참고자료: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개요	3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지혜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4. 11.
3. 회 부 일 : 2025. 10.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일관된 정책 추진과 공동 대응이 필요하나,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과 연계한 보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연계성이 미흡하므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또한, 국가의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시대의 친환경적 발전원 확보를 위하여 환경과 주민수용성을 고려한 대규모 부지 확보가 필요하나, 재생에너지 발전부지의 개발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므로,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 및 개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 나. 재생에너지발전지구와 관련한 사항을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에서 다루게 함(안 제8조제2항제3호의2 신설).
- 다. 재생에너지발전지구를 정의하고 그 지정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비계획적이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통수용성 등을 확보하여 효과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조 제6호 신설 및 제28조의2 신설).
-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송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발전지구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의 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해제와 사업시행자 지정요건등을 명시함(안 제28조의4부터 제28조의6까지 신설).
- 마. 사업시행자는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의제조항을 신설함(안 제28조의7부터 제28

조의9까지 신설).

바.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활발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처분을 허용함(안 제28조의12 신설).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15 신설).

Ⅲ. 검토의견

1.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지역계획 수립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¹⁾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²⁾ 수립 시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지정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안 제5조제2항제5호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기본계획과 실행계획³⁾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1) 정부조직개편('25.10.)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간
2.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목표
3. 총전력생산량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
4. 「에너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 목표
5. 기본계획의 추진방법
6.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의 평가와 보급전망 및 기대효과
7.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지원 방안
8.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계획
9.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10.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별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략)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신설>	5의2. <u>재생에너지발전지구 지정계획</u>
6. ~ 10. (생략)	6. ~ 10.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신설>	제5조의2(지역계획의 수립) ①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② <u>지역계획의 내용, 수립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국가 주도의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시행 체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독자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할 법적 의무나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정부의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이 지역 현장에까지 효과적으로 연계·이행되기 어렵고, 지방정부의 에너지 정책도 개별적·단기적 대응에 그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입지, 인허가, 인프라 등에서 지자체의 실질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나, 현행 법령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제도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지정·개발에 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지정계획’을 포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는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자체의 지역여건과 주민 수용성을 반영한 보급체계를 강화하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특히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은 지역 갈등이나 환경문제 등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계획 단계부터 참여하여 책임을 공유하는 구조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법」 제7조제2

항에 따라 5년마다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⁴⁾, 이 계획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가이드라인(2019.6)」에 따라 국가계획과의 정합성, 지역 특성 반영, 주민참여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권장되고 있어, 개정안의 취지가 일정 부분 현행 제도로 구현되고 있으므로 개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4) 「에너지법」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2. 재생에너지 발전지구의 정의 및 지정

안 제2조는 재생에너지발전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재생에너지발전지구”를 정의하고, 안 제28조의2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안 제28조의3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지역을 대상으로 심의회를 거쳐 재생에너지발전지구를 지정하도록 하고 이를 의무화함.

또한, 재생에너지발전지구로의 지정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6. “ <u>재생에너지발전지구</u> ”란 <u>재생에너지발전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제28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되는</u> 구역을 말한다.
제8조(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① (생략)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생략)

<신설>

4. · 5. (생략)

③ (생략)

<신설>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재생에너지발전지구에 관한 중
요사항

4.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달성
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생에너지발전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한 발전지구를 변경하려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에게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 또
는 제2항에 따라 재생에너지발전지
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
는 미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16
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발전지구를 지정하
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주민, 관계 전문가 및 제2
8조의15에 따른 전담기관 등의 의견
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
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
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의 청취
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발전지구를 지정하
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
하여야 한다.

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재생에너
지발전지구가 지정·고시된 후 해당
사업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
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도로·철도·교량·운하·수도 및
수로 등과 그 부속물의 설치

2. 하천유수(河川流水)의 진로변경,
하천 또는 해수면의 매립과 준설
(浚渫),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및
어업권의 설정

3.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개축

4. 토지의 개간, 지반의 굴착(掘鑿)·

<신 설>	매립,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발전지구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의3(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요건) 재생에너지발전지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재생에너지 발전에 적합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갖추고 있을 것 3.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을 회피할 것 4.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위한 부지의 확보가 가능할 것 5.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	--

현행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등에 관한 지침」⁵⁾은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집적화단지(참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동 지침에 따른 집적화단지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수용성·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하여 40MW를 초과하는 신재생

5)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이하 "집적화단지"라 한다)란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집단으로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지정·공고되는 구역을 말한다.

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지구”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음.

[재생에너지발전지구(개정안)와 집적화단지 비교]

구분		재생에너지발전지구(개정안)	집적화단지
도입 목적		지자체의 신재생 지역계획 수립, 재생e의 집단적 설치 유도	지자체 주도 주민수용성 확보, 난개발 방지
적용 기준	용량	별도 기준 X	단일 발전소 40MW 초과
	기타 (주민 수용성)	① 지구 지정시 주민, 관계 전문가 및 전담기관의 의견을 수렴·반영 필요	① 신청전 민관협의회, 사전입지 컨설팅, 주민 등 의견청취 결과 및 조치 계획 ② 주민-사업자간 이익공유
지정 절차		개발계획 평가 * 지정 신청→개발계획 평가→지정	사업계획 평가 * 지정 신청→사업계획 평가→지정
인센티브		-	가중치 최대 0.1 추가부여 * 항목별 가중치 부여 세분화
특징		지자체의 개발계획 수립, 대규모 발전사업 추진	대규모 입지를 대상 주민-사업자간 이익공유
실적		-	(’21) 임하댐 수상태양광(45MW) (’22) 전남 신안군 그린솔라발전 1단지 태양광(41.88MW) (’24)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0.4GW) (’25) 전북 서남해 해상풍력(확산단지1)(1.0GW) 전남 신안 해상풍력(3.2GW)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26.2)

다만, 재생에너지발전지구는 집적화단지보다 적용 대상이 넓어, 해상풍력을 제외한 소규모 육상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사업도 포함할 수 있는 발전구역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두 제도 모두 주민수용성 확보를 중시하고, 사전계획 수립과 평가 절차를 통해 지역 여건에 기반한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방향성이 유사하다고 보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발전지구를 신설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미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을 위한 집적화단지가 '20.10월부터 시행 중으로 이를 통한 계획입지 및 대규모 발전이 가능하며,

'25.3월 제정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으로 풍력에 대한 발전지구 지정이 가능하므로, 집적화단지와 풍력 발전지구 등을 우선적으로 활용한 후 성과 평가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개정안의 발전지구 도입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임.

한편, 안 제28조의3은 발전지구의 지정요건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에 적합한 재생에너지 자원 보유,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 회피, 부지 확보 가능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다음의 요소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먼저, 재생에너지 발전의 간헐성과 출력 변동성을 고려할 때, 전

력계통과의 연계 가능성은 발전지구 지정 시 핵심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며, 연계가 어려울 경우 발전된 전력의 수용 자체가 제한되어 사업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음.

또한,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확보 역시 사업추진의 지속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하므로, 민관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이들의 참여와 협의를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2025년 3월에 제정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 또한 이와 유사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민관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예비지구에 한하여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⁶⁾

6)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발전지구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제17조에 따라 민관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친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풍향을 보유할 것

2. 발전지구 부지 및 기반시설의 조성이 가능할 것

3.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 및 환경친화적 발전지구 조성이 가능할 것

4. 해상풍력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5. 전력계통 연계를 고려할 것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발전지구의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민관협의회와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전지구를 변경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지구를 지정하기 전에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이하 “송전사업자”라 한다)에게 발전지구의 전력계통 연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발전지구가 지정·고시된 후 해당 발전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거나 직접 사업을 하려는 경

3.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접속설비, 지정해제 및 사업시행자

현행	개정안
<신설>	제28조의4(재생에너지발전지구 접속설비 건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이하 “송전사업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발전지구에서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이하 “공동접속설비”라 한다)의 건설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송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송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동접속설비에 접속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전기사업법」 제15조에 따른 공동접속설비의 건설과 운전 유지 등에 대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전사업자가 공동접속설비를 건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건설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제28조의5(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해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생에너지발전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재생에너지발전지구가 지정된 날부터 5년 이내

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철도·교량·운하·수도 및 수로 등과 그 부속물의 설치
2. 하천유수(河川流水)의 진로변경, 하천 또는 해수면의 매립과 준설(浚渫),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및 어업권·양식업권의 설정
3.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개축
4. 토지의 개간, 지반의 굴착·매립,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지구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⑦ 그 밖에 발전지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에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그 지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28조의7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제28조의7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천재지변 등 기타 중요한 사정 변경으로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목적을 명백히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변경·결정된 후 제1항에 따라 해당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그 재생에너지발전지구에 대한 용도지역은 변경·결정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환원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8조의6(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사업시행자) ①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한다.산업통상자원부
--------------------	--

	1.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u> 2. <u>공공기관</u> 3. 「<u>지방공기업법</u>」에 따른 <u>지방공사</u> 4. <u>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u> ②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공모하여 지정할 수 있다.</u> ③ <u>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
--	---

1) 접속설비 건설 관련

안 제28조의4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⁷⁾이 송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발전지구에서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의 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송전사업자는 발전지구 내 발전사업자에게 공동접속설비의 건설과 운전유지 등에 대한 비용을 부과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접속

7) 정부조직개편('25.10.)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설비 건설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는 송전사업자(한국전력)가 우선 공동접속설비를 설치하고 건설 및 운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추진 속도를 제고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해상풍력법」 역시 송전사업자에게 발전지구의 공동접속설비를 건설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발전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⁸⁾

다만, 안 제3항 전력기금을 통한 공동접속설비건설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해상풍력법」 심사과정에서 당시 기획재정부는 ‘송변전설비 설치에 따른 전력판매 수입이 한전에 귀속되므로 비용도 한전이 부담하여야 하고, 전력기금의 투자여력이 제한적이다’는 사유로 동 조항의 신설을 반대한 바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2) 재생에너지 발전지구의 지정해제 관련

8)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발전지구 전력계통의 연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송전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지구에서 복수의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이하 “공동접속설비”라 한다)의 건설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송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송전사업자는 공동접속설비에 접속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전기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동접속설비의 건설과 운전유지 등에 대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안 제28조의5는 ① 지정된 재생에너지발전지구가 지정된 지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지 5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③ 실시계획 승인 이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④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목적을 명백히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회를 거쳐 발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해상풍력법」과 유사하게⁹⁾, 발전지구를 지정·운영하여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도 지정해제가 가능하도록 해당 조문의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사업시행자 지정

안 제28조의6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가 설립한 개발조합 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공모절차를 통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9) 「해상풍력법」

제21조(발전지구의 지정해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발전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입지개발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되,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공공부문 또는 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 등으로 한정함에 따라 사업참여 가능 범위가 제한되고 있으며,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더라도 대행사의 전문성 및 수행능력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반면, 「해상풍력법」은 발전사업자를 수행능력과 자금 조달능력 등을 고려하여 입찰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하여¹⁰⁾ 보다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음.

동 법 제27조에 따른 집적화단지의 경우에도 공모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개정안의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및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0)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200메가와트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소유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우대할 수 있다.

1. 발전단가 등 해상풍력발전사업의 효율적 수행능력
2. 재무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3. 이익공유 등 이해관계자 상생 및 수용성 확보 노력
4. 해상풍력발전 산업경쟁력 확보 및 해상풍력산업 발전에의 기여
5. 그 밖에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입찰대상 발전지구의 위치 및 면적
2. 입찰대상 발전지구의 유효기간
3. 입찰참가자의 자격기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실시계획 수립, 승인 및 승인 취소 등

안 제28조의7은 사업시행자에게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실시계획에는 재생에너지 자원, 지역경제 및 환경 여건, 기본구상, 사업단계별 계획, 투자계획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안 제28조의8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규정하며, 승인 전에 환경부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신설>	제28조의7(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①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시계획의 개요 2. 현황 및 여건(재생에너지 자원, 지역경제, 환경 등) 3. 기본구상 4. 총괄 사업계획 5. 세부 사업계획(사업 설계, 공사, 운영, 해체, 설비 개선 등)

<신 설>	6. <u>사업단계별 생물다양성 영향 회피 및 상쇄 방안</u> 7. <u>지역경제 기여 방안</u> 8. <u>사업비 집행 및 관리 계획</u> 9. <u>사업추진 방식</u> 10. <u>투자계획</u> 11. <u>기대효과</u> ③ <u>실시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28조의8(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실시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

	<u>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u> <u>⑥ 제5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u> <u>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시계획 승인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28조의14(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취소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공사중지 등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u> <u>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u> <u>2.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u> <u>3.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에 대통</u>
--	--

<신 설>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안 제28조의8은 승인 신청에 앞서,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열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발전지구 개발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사업 초기단계에 소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이와 유사하게 「해상풍력법」 제17조는 어업인단체, 주민대표,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¹¹⁾를 구성하여, 기본설계안, 발전지구 지정 관련 사항, 주민참여 이익공유 사업 구성·운영 등 주

11)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민관협의회 구성·운영) ① 시·도지사(예비지구가 동일한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 두 개 이상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해역에 걸쳐 있는 경우)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예비지구가 단일한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해역에 위치한 경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어업인단체,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대표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지구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 위치하거나,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해역에 걸쳐 있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 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시·도지사를 결정한다.

1. 기본설계안에 관한 사항
2. 발전지구의 지정·변경지정·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의 인근 주민 또는 어업인을 포함한 주민참여 이익공유 사업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②·③ (생략)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관협의회와의 협의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설계안을 어업인, 주민 등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열람하게 하고,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⑥ (생략)

요사안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고, 민관협의회 협의 결과는 실시계획 수립 시 포함되도록 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수용성을 제고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한편, 안 제28조의14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을 승인받았거나, 승인 후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취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위법·부당한 사업의 추진을 방지하고,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도 감독권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볼 수 있음.

5.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안 제28조의9는 사업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공유수면사용허가를 비롯한 약 30여 개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8조의9(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28조의7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신고·지정 또는 결정·면허·협의·동의·해제·심의·등록·처분 등 (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에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

	· <u>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u> 7.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u>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u> 8.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u>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u> 9.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u>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u> 10.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u>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u> 1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u>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u> 12.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u>초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u> 13.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u>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u>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u>개장허가</u> 15.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u>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u> 1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u>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u> 17.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른 <u>해상교통안전진단</u> 18.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u>도로의 점용허가</u> 19.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u>항로표지의 설치·관리의 허가 또는 신고</u> 20.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u>국유재산의 사용허가</u>
--	---

	2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2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등 2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24.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25.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26.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27.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2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②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제28조의8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	---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추진 속도를 높이고,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일반적인 풍력·태양광 발전사업 절차([참고])를 고려할 때, 개정안의 일부 인·허가 의제 대상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예컨대, 풍력발전 사업의 경우, 개정안에 포함된 「전원개발촉진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허가 사항은 실제 사업 추진단계에서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의제 대상으로 포함할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보임.

반면, 풍력발전사업의 입지 특성상 자주 적용되는 「산지관리법」상 산지일시사용허가, 「습지보전법」상 습지보호지역 행위허가 등은 실제 사업 추진과정에서 핵심적인 인허가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의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제 대상의 조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참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



*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해상풍력법」(26.3월 시행예정)에 따라 인허가 의제 등을 적용 받을 예정이며 위 도식은 기존 사업 절차로 태양광, 육상풍력과의 비교를 위해 참고로 표기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26.2.)

6. 토지수용, 준공인가, 전담지구 지정 등

현행	개정안
<신설>	제28조의10(토지수용) ① 사업시행자는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28조의8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신설>	제28조의11(국유지·공유지의 처분 제한) 재생에너지발전지구(실시계획이 수립된 지역만 해당한다)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신설>	제28조의12(발전사업부지의 처분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재생에너지발전지구 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이하 “발전사업부지”라 한다)을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전사업부지를 분양·임대·양도 등(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발전사업부지의 처분 방법·절차·가

<신 설>	<u>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28조의13(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발전지구 내 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즉시 준공인가를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공사가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u> <u>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28조의9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해당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u> <u>④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으로 설치된 발전시설 및 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신 설>	<u>제28조의15(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u> <u>② 정부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 <u>③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1) 토지수용 관련

안 제28조의10은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수용·사용권을 인정하여, 발전지구 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는 「해상풍력법」 제29조의 조문 규정과 동일한 것으로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장 측면 및 원활한 재생에너지 발전지구 개발을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 할 수 있음.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4조의2¹²⁾는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추가로 「토지보상법」 별표 개정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2) 개발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관련

안 제28조의15는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이의 운영 등에 필요

1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한 경비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에는 전담기관의 구체적인 역할과 업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발전사업자의 선정 및 관리, 발전지구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전담하도록 하여 업무의 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와 유사하게 「해상풍력법」에 근거한 해상풍력전담기관은 해상풍력입지정보망 구축·운영,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업, 해상풍력발전의 동향 분석 및 통계작성 등의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센터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집적화단지 입지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 지원,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평가·심의,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¹³⁾

13)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전담기관"이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를 말한다.

제16조 (권한의 위임·위탁) 장관은 집적화단지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집적화단지 입지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 지원
2.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의 평가·심의 등
3.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정된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의 이행여부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벌칙

안 제34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거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제34조(벌칙) ① (생 략) ② <u>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공급인증서를 발급한 자</u> 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③ <u>제12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공급 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 외에서 공급인증서를 거래한 자</u> 는 2년 이하	제34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u> -----. 1. <u>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인 증서를 발급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공급인증서를 발급한 자</u> 2.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사업시행 자로 지정받은 자</u> 3. <u>제28조의14제1호의 행위를 한 사 업시행자</u> ③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u> -----.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12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 외에서 공급인증서를 거래한 자
<신 설>	2.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신 설>	3.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이는 사업시행자 지정이나 실시계획 승인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승인된 실시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이 적법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입법조치라 보임.

참고로, 「해상풍력법」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거나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착공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¹⁴⁾

14)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9조(벌칙) ① 제45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1항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제27조제2항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4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착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발전시설 및 설비를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 의 처
02)6788-5533

□ (개념) 지자체 주도로 수용성을 확보하여 태양광·풍력 등 40MW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구역('20.10~)

* 근거: 신재생에너지법 제2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7조의2 (시행령 '20.10월 개정 시행)

* 집적화단지 內 1개 이상의 40MW 초과 사업 실시 가능, 154kV 이상 계통연계 필요

○ (지자체 역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①입지발굴, ②수용성·환경성 확보, ③사업자 공모, ④인허가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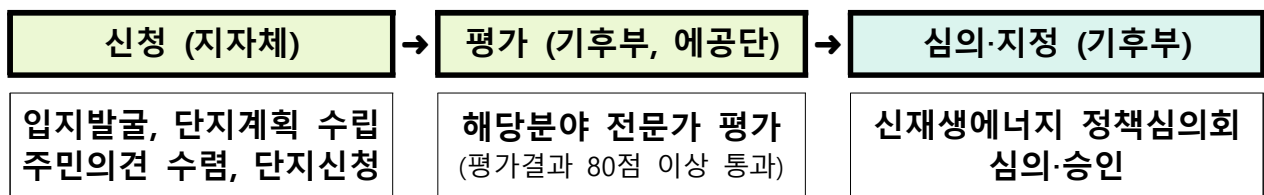
- 특히, 계획수립 단계부터 주민·어민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 의견수렴 강화

○ (중앙정부 지원) 지자체가 요건*을 갖춰 신청하여 평가를 통해 지정되면 지자체 주도형 REC 가중치를 최대 0.1 범위에서 부여

* △사업의 실시능력(사업계획 등의 적정성), △지자체의 수용성·환경성 확보 노력 및 계획, △계통연계 방안의 적정성, △지자체 주도형 REC 가중치 수익 활용방안

□ (절차) 지자체가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여 사업계획 수립·제출하면 에공단(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신재생 정책심의회에서 지정

* (평가) 평가위원단의 평가결과 80점 이상 →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심의·승인



□ (기대효과) 사업 초기단계부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민관협의회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사업 이해도 제고 및 수용성 확보 도모

○ 지자체에 부여하는 REC 가중치 수익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지정현황) 풍력 3건, 태양광 2건 등 총 5건 지정

사업명	지정 공고일	실시기관(지자체)	사업기간
인하댐 공공주도 수상태양광	'21.12.	경상북도 안동시	'21.7 ~ '25.8 ('25.9 준공)
전남 신안군 그린솔라발전 1단지	'22.11.	전라남도 신안군	'23.1 ~ '26.12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24.2.	전북특별자치도	'20.1 ~ '29.12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확산단지1)	'25.2.	전북특별자치도	'22.1 ~ '30.12
전남 신안 해상풍력	'25.4	전라남도	'25년 ~ '33년